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December 2022

Hot Topic

글로벌 불확실성(리스크) 하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전략



Contents

Hot Topic

02 글로벌 불확실성(리스크) 하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전략

ESG

13 국내외 ESG 동향

GAAP

26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GAAS

31 2023 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34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

TAX

36 최신 세무뉴스

38 최신 세무예규판례

K-SOX

41 K-SOX 동향



Hot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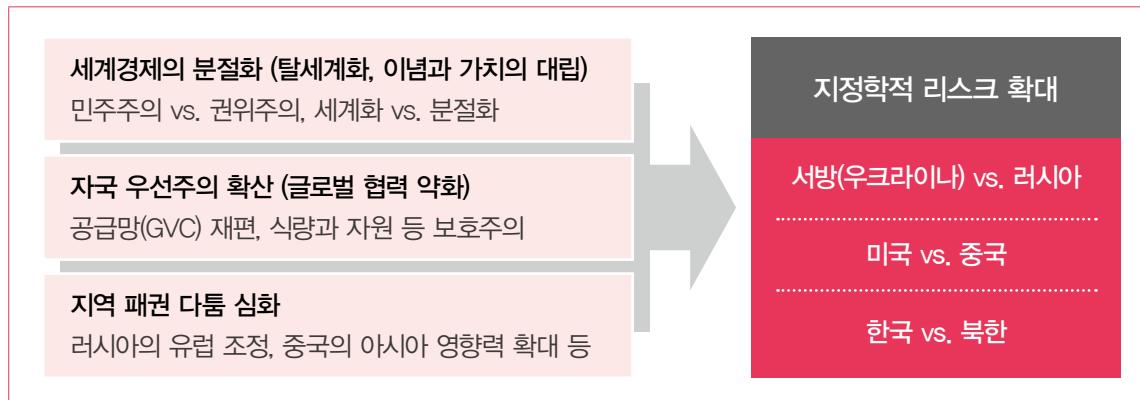
Hot Topic

글로벌 불확실성(리스크) 하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전략

1. 글로벌 경제 진단: 3高(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

-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GVC) 확충에 기반한 세계화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세계화로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임금이 안정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음. 이는 곧 저금리 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세계화로 동반 성장하던 세계 각국은 2017년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 EU 탈퇴 등 탈세계화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되고 생산성 저하, 비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 여기에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경제 전반의 수급에 왜곡이 발생 하였음. 특히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 등은 자원과 식량을 무기화하는 보호무역주의(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켰음
-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온 세계화를 분절시키며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게 하였음

[도표 1] 글로벌 경제구도 재편 과정: 탈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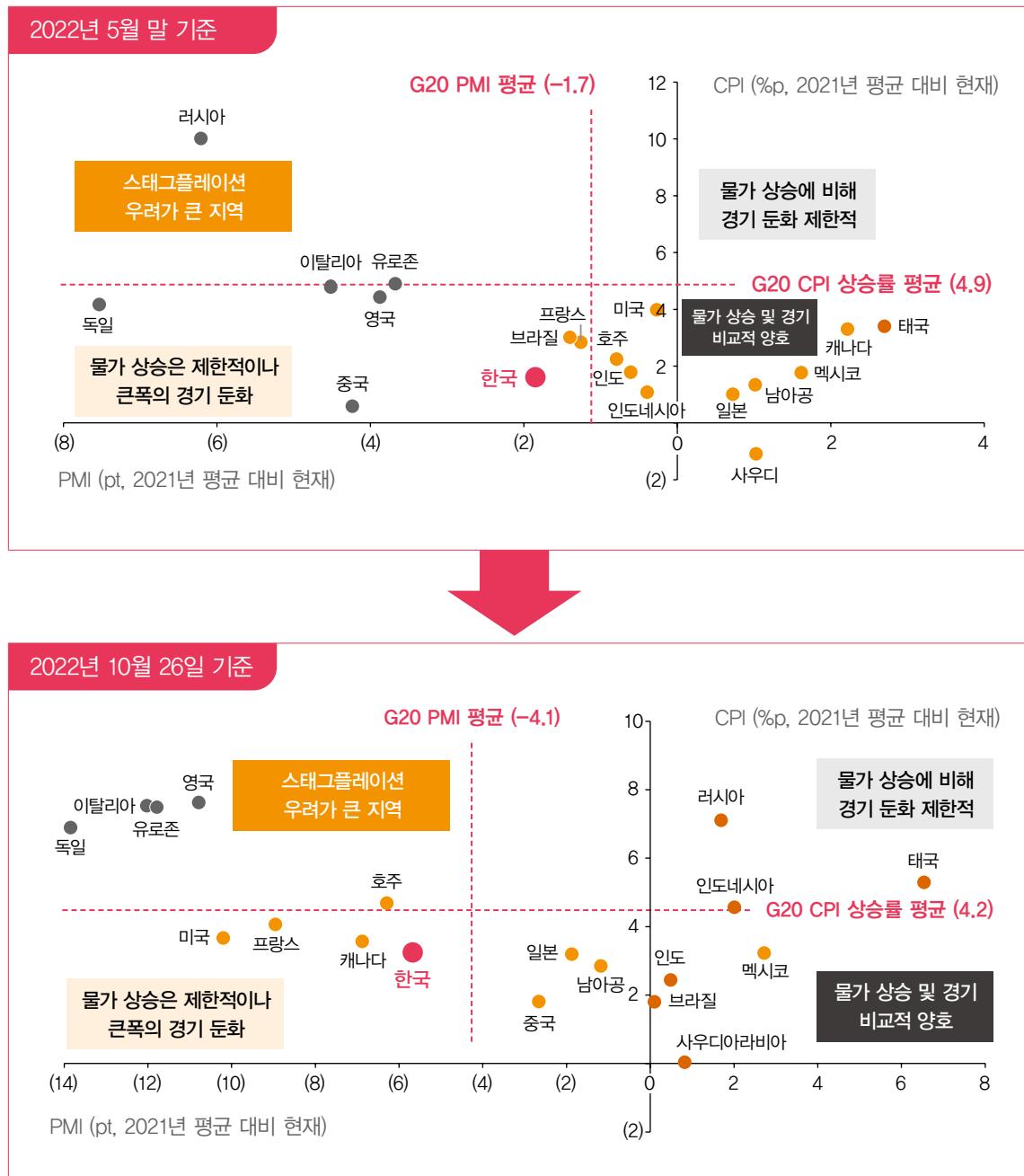


*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및 신흥국 다수의 중앙은행은 통화긴축(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저물가 기반에 익숙했던 장기 경기 확장과 달리 경기 수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은 경기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 둔화도 문제지만 금융위기 및 코로나를 거치면서 증가된 과다한 유동성이 선진국에게는 정부부채 증가로, 신흥국에게는 민간부채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향후 통화긴축에 따른 디레버리징 압력이 커질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부채 누증과 좀비기업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 ▣ 현재 글로벌 경제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정점에서 하락(둔화)하는 국면을 지나 위축되는 상황(수축 국면)에 위치해 있음. 높은 물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음

[도표 2]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 경기(5개월의 변화): 유로존 위험 부각 (단위: %p, pt)



* 자료: Bloomberg

(*1) G20 중 터키 제외 (터키 2021년 평균 대비 물가 상승률 64%p로 전체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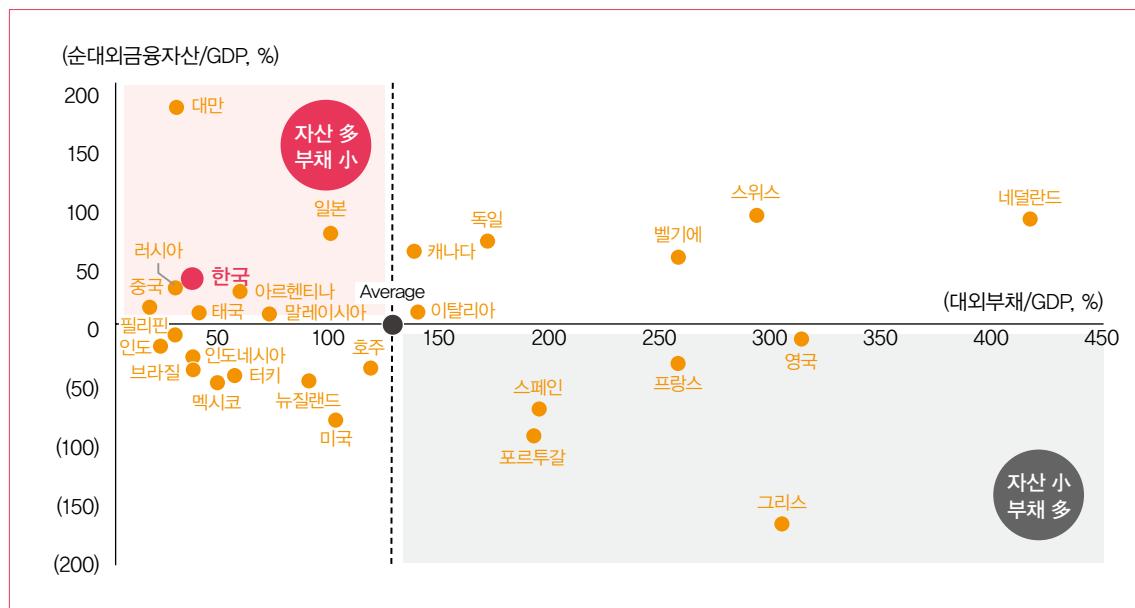
(*2) 2022년 5월 말 대비 경기 상황이 좋아진 국가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며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는 러시아, 브라질임

(*3) 글로벌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유로존임(터키 포함)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 보임

(*4) 한국의 경우는 물가의 오름폭은 크지 않으나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전쟁, 빠른 긴축 등을 생각하면 경기 침체는 길고 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레버리지 관련 지표를 보면 다른 형태의 경기 침체(금융위기 없는 경기 침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다행스러움
 -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높아진 금리에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임.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아직 주요 국가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미국, 유럽 등) 민간의 낮은 부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예외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국가라는 점이 부담임. 다만 국가 부채 측면에서는 이와 반대임
 - 중국의 GDP 대비 대외부채는 2010년 한 자릿수대에서 15%로, 한국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도 20% 대에서 35% 수준으로 높아졌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부채 부담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
 - 아울러 순대외금융자산이 플러스를 기록 중인, 즉 해외에 자산을 보유 중인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경우 해외부채가 늘어나는 동시에 해외 자산도 늘어난 만큼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도표 3] 국가별 건전성 위치: 순대외금융자산과 대외부채 (단위: %)



* 자료: CEIC,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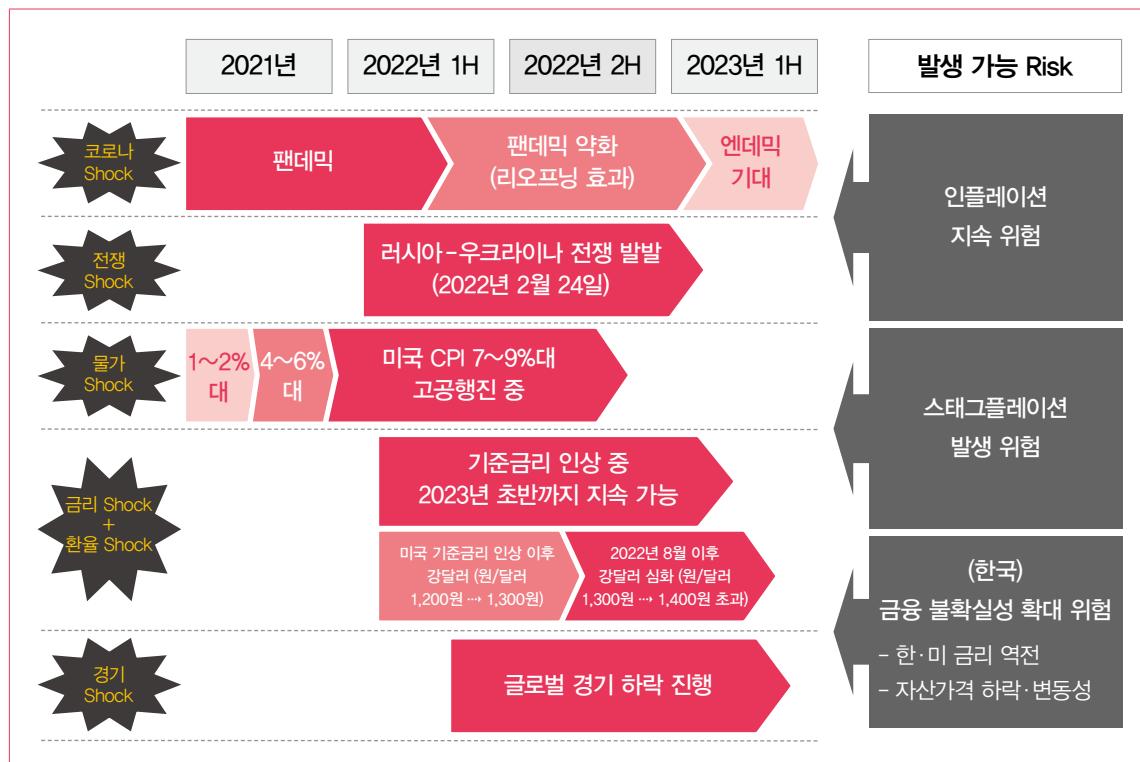
(*1) 2021년 말 기준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기업 및 가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경기 부진의 원인: 글로벌이 직면한 다양한 Shock

- 2022년 들어 팬데믹 완화에 대한 기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리오프닝)되면서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보이는 듯했음. 하지만 2월 말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속에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요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게 됨.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통화긴축 강도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음
- 더불어 8월 이후 킹 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과거에는 수출 경쟁력 등 자국 경제를 위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 전쟁을 벌였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달러 초강세에 따른 비자발적인 환율 전쟁이 나타나고 있음
 -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른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심화, 유럽 에너지 리스크 및 중국 경기 부진, 거기에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글로벌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분위기로 최소한 연말 또는 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도표 4] 글로벌 Shock 현황 및 추가 발생 가능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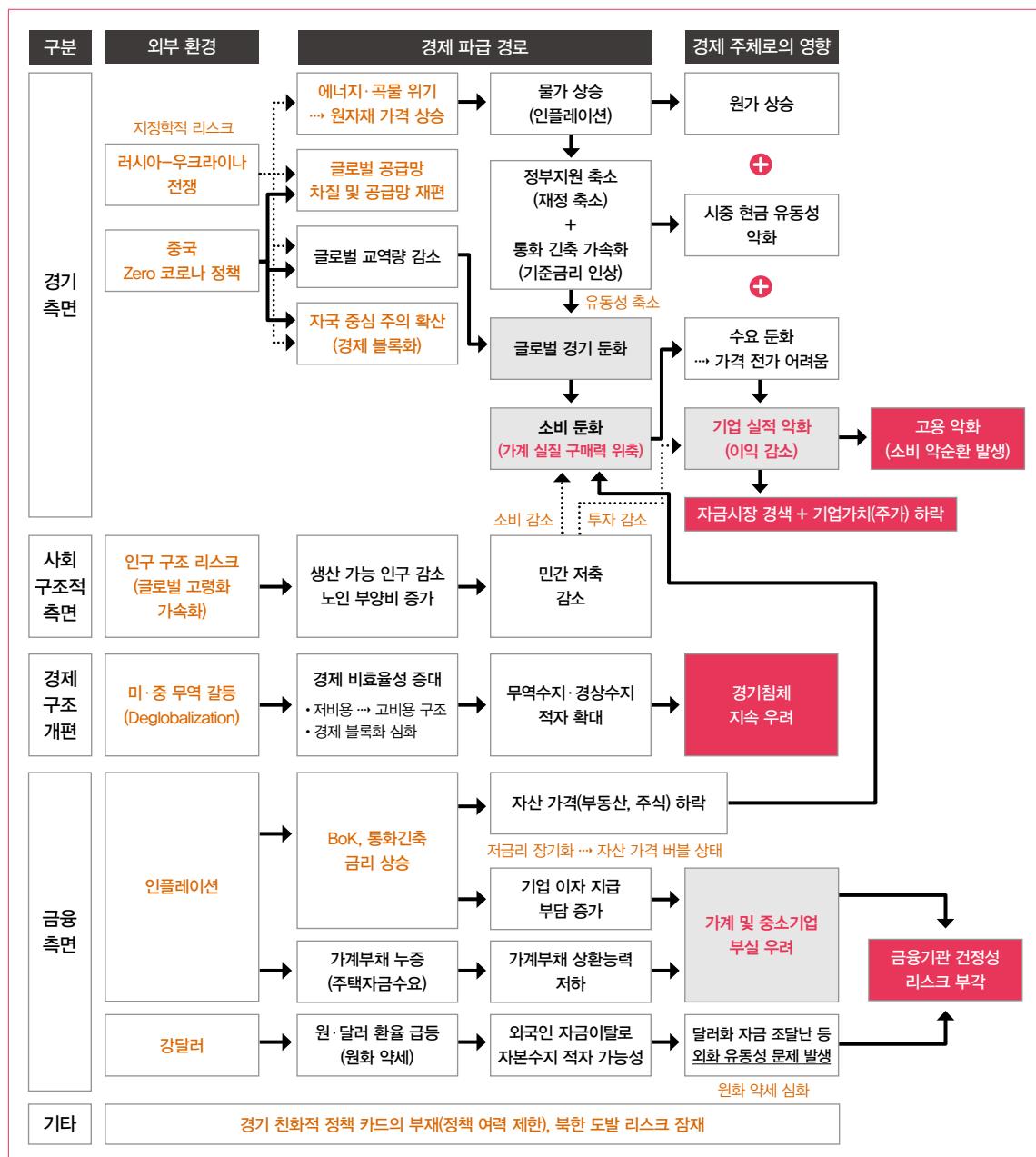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3.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의 파급 경로 (영향)

- COVID-19 팬데믹에서 시작된 글로벌 리스크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긴축정책)으로 인한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
- 이번 국면에서의 글로벌 리스크는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임. 경기 및 경기 외적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임
- 현재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여 추가 발생 가능한 파급 영향을 살펴보자 함

[도표 5] 산재된 글로벌 리스크의 파급 경로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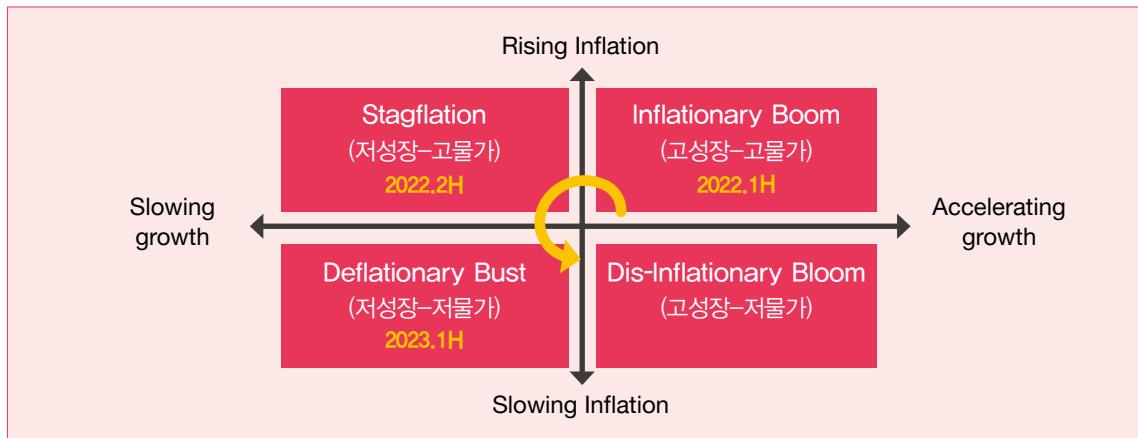
4. 결론: 글로벌 불확실성 下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방안

□ 현재 경기 상황은 둔화에서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사실화

-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7월 고점 이후 15개월 하락 국면 지속 중임. 과거 경기 하락 국면(4개 구간)을 살펴보면, 하강은 평균 22개월 지속되었음

… 경기 하강 국면 최소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듯

[도표 6]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본 경제 상황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또한 연준의 긴축 횡보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게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기업 실적 하향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아직까지는 그나마 고용이 양호한 상태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높아진 금리, 임금 상승, 원가 부담 등을 고려시 기업의 고용환경이 나빠지게 됨. 이러한 고용환경은 소비 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나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단기 자금시장도 불안요인임.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음. 특히 단기 달러 자금 조달 환경을 보여주는 달러 스왑 베이스도 하락하면서 역외에서의 달러 조달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과거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럴 경우 경제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기업

- 최대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국면
- 다만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면 Valuation이 낮아진 성장 동력 업종으로의 진출 기회
- 그렇다면 어떤 분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것인가

- ① 정부가 직접 투자 확대하는 분야 (B2G 투자)
 - ②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분야 (정부에 의한 B2B 투자)에서 기회가 생길 것
 - ③ 탈세계화의 주도권 확보 조건은 '기술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 분야로, 모든 국가들의 중복 투자 발생 가능성 높음 (과학기술 및 에너지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

- * 글로벌 테마: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포함),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 * 2023년, DARPA에서 대규모 신규 예산 편성된 분야: 반도체(패키징)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제시 보고서 작성)
- * 글로벌 기술 우위로 경제 패권 잡기 위한 경쟁 분야: 우주, 사이버 보안, AI, 5G 등
- * 미국 IRA에 따른 세제혜택 발생 분야: 전기차(2차 전지), 태양광·풍력·수소
- * 사우디 등의 투자 가능 분야: 수소·원전

[도표 7] 2023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조 원, 배)

구분	2017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2017~2022년 CAGR	2023년 증감률
총지출	400.5	607.7	639.0	8.7	5.2
보건·복지·고용	129.5	217.7	226.6	10.9	4.1
일반·지방행정	63.3	98.1	111.7	9.2	13.9
교육	57.4	84.2	96.1	8.0	14.1
국방	39.0	54.6	57.1	7.0	4.6
R&D	19.5	29.8	30.7	8.9	3.0
SOC	22.1	28.0	25.1	4.8	-10.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31.3	25.0	14.4	-20.1
농림수산식품	19.6	23.7	24.2	3.9	2.1
공공 안전	18.1	22.3	22.9	4.3	2.7
환경	6.9	11.9	12.4	11.5	4.2
문화·체육·관광	6.9	9.1	8.5	5.7	-6.6
외교·통일	4.6	6.0	6.0	5.5	0.0

* 자료: 기획재정부

(*1)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

SOC,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은 감소 전환. 교육 예산만 8.0%에서 14.1%로 증가

[도표 8]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분야

구분	투자 계획
삼성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해외 M&A
SK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LG	배터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현대차	내연기관차, 전동화 및 친환경, 로보틱스, UAM
포스코	철강, 친환경 미래 소재, 친환경 인프라
한화	신재생 에너지, 방산 및 우주항공
롯데	렌탈, 케미칼(수소 및 전자소재), 헬스&웰니스, 리사이클, 화학, 식품·유통·호텔
현대중공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 R&D, 제약·바이오(신사업 진출) , 디지털
GS	에너지(SMR, 친환경 에너지, 유통·서비스, 건설·인프라
신세계	On&Off line 유통, 테마파크 등 복합 개발 사업, 신사업 발굴(헬스케어 및 콘텐츠)
CJ	식문화(콘텐츠, K-푸드), 플랫폼(물류·커머스), 웰니스&지속가능성 분야(미래형 신소재 투자)
두산	에너지(SMR, 수소 등), 신사업 발굴(반도체, 협동 로봇, 드론 등)

* 자료: 언론기사



개인

- 개인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수입원(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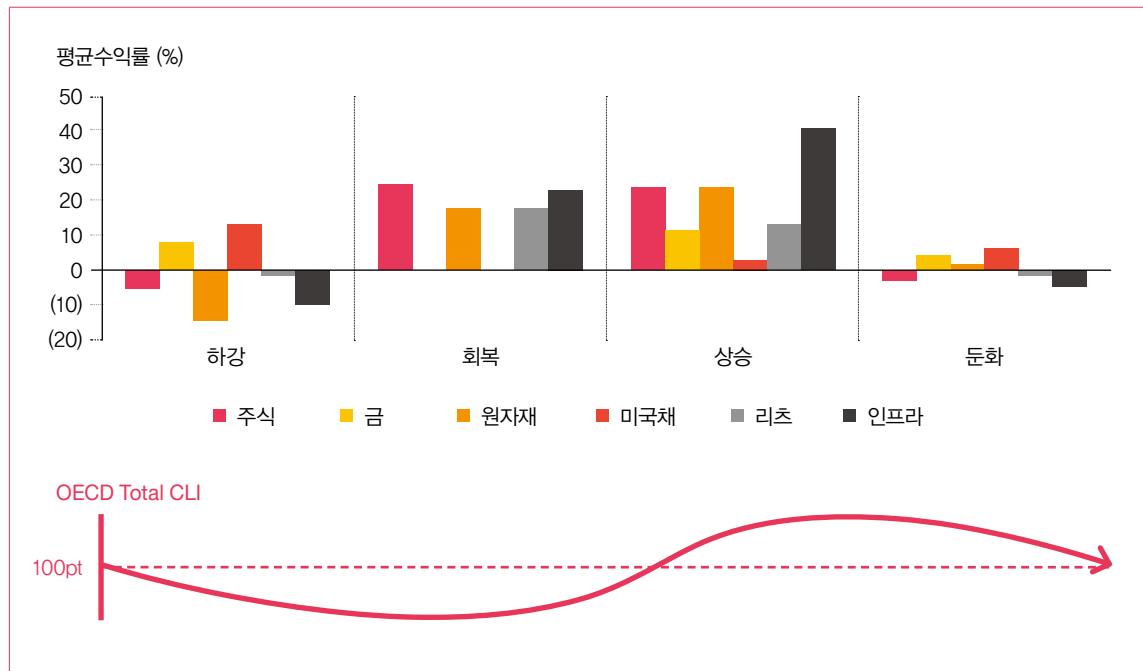
[도표 9] 자산별 투자의견

구분	의견	내용
주식	비중 축소 유지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방어 관점 접근)
채권	비중 확대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기대
리츠	비중 축소	부동산 실물發 악재 발생 가능성
원자재	중립	경기둔화와 공급 차질 리스크 사이의 경합. 다만,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부각으로 에너지와 농산물은 양호

* 자료: 언론기사

- (자금시장 측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보와 단기채 투자가 필요해 보임. 하지만 달러 수요 확대와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력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국 장기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시점
- (경기 측면) 하강 국면에서는 통상 미국채와 금으로 대표되는 안전자산의 자산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당분간 경기 하강 국면 지속에 따라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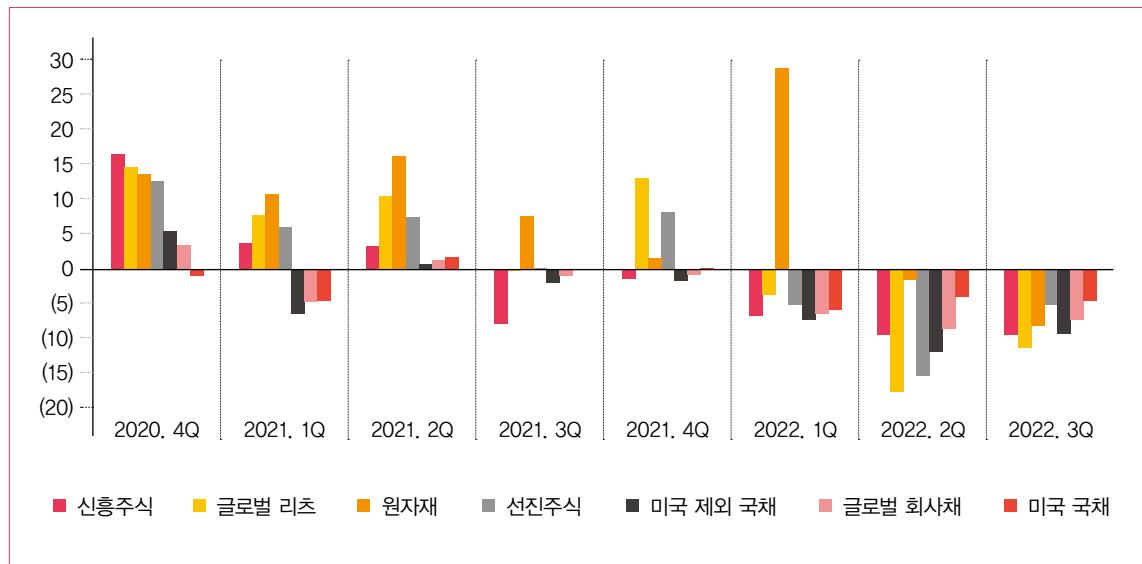
[도표 10] 경기국면에 따른 평균 자산수익률 (단위: %)



* 자료: Bloomberg

- (금리 측면) 실질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실물 자산(리츠, 인프라, 금, 원자재 등) 중에서 리츠와 인프라(정부 경기 방어 투자 중심)가 상대적으로 자산 매력도가 높음. 다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發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음

[도표 11] 분기별 주요 자산군의 성과 (단위: %)



* 자료: Bloomberg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복합적 리스크가 산재 시에는 선별적인 안전자산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채권(미국채, 국채 및 우량 채권) … 원자재(금, 에너지, 곡물 위주) … 현금
- … 리츠(물가 연동 계약구조를 가진 리츠로 선별적 투자) … 주식(당분간 보수적 접근)



ESG

국내외 ESG 동향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1. 글로벌 제조사, '탈(脫)플라스틱' 선언 E

글로벌 주요 제조업인 소니, 애플 등이 자사 제품의 포장재로 더 이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업들은 왜 '탈플라스틱' 선언을 발표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시대'의 선두 주자인 EU는 2021년부터 재활용 불가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세(Plastic Tax)를 도입하였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생산 촉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을 위한 플라스틱 감축 관련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탈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며,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및 규범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들은 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들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어떠한가요?

최근 일본 전자 업체로는 처음으로 소니가 '탈플라스틱'을 선언, 내년부터 제품 포장재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이어폰 등 소형 제품부터 적용 후, TV 등 대형 제품으로 범위를 늘려 갈 계획이며, 종이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신소재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애플은 주요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중을 4% 줄였고, 2025년까지 모든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오명을 가진 '코카콜라'의 경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행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사에게 불리한 정보일지라도 버진 플라스틱^(*1)과 PCR^(*2) 플라스틱 생산량과 감축 목표 검증 현황을 모두 공개해 '보고의 투명성'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출발이자 순환경의 시작이라는 데에 집중한 것입니다.

(*1)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2)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플라스틱

[도표 1] 주요 글로벌 기업의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소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종이, 대나무 등 신소재 플라스틱으로 대체소형 제품(스마트폰, 이어폰 등) 포장재부터 플라스틱 비사용 적용(2023년) …> 대형(TV 등) 제품으로 범위 확대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요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중 4% 감소2025년까지 모든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사용
코카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플라스틱 생산량과 감축 목표 검증 현황을 모두 공개하여 '보고의 투명성' 강화

한편, 국내 기업도 플라스틱 감축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또한 재정비될 추세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임팩트 보고서(imPACT Report)'에 따르면,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내 9개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5,120여 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정부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안'을 발표하여 '탈플라스틱 시대'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도표 2] 국내 주요 식음료, 화장품, 숙박, 금융사 등 9개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현황 (단위: 개)

병	라벨	컵	뚜껑	빨대	칫솔
14,655,659	696,986,400	4,400,000	4,000,000	1,077,00	98,214,286
빗	스파츌라	수저	룰티슈	케이스	봉투
34,550,000	580	343,683,654	9,737,878	522,129	20,000,000
테이프	아이스팩	보냉백	완충재	기타	
601,089	118,560	6,334,950	1,895,789	12,100	
총 5,120톤 감축					

* 자료: WWF 「임팩트 보고서(imPACT Report)」, PwC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애플·소니 등 글로벌 제조사, '탈플라스틱' 천명 – 전자신문 (2022. 11. 8.)
- 코카콜라 그린워싱 논란이 부러운 까닭 (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2022. 11. 13.)

2. '국제 메탄 서약' 서명국 150여 개로 증가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에서 '국제 메탄 서약'의 서명국이 1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COP26에서 발족되었습니다.

▣ 국제사회는 왜 메탄 감축에 주목하는 걸까요?

메탄은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지수*가 CO₂ 보다 25배 큰 물질입니다. 지난해 8월 승인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 보고서는 '메탄이 전체 지구온난화에 30%가량 기여해 기온을 0.5°C 상승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발표된 유엔 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메탄 평가 보고서는 '인위적 활동에 따른 메탄 배출량을 45%(연 1억 8천만 톤) 줄이면 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 중 0.3°C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 GWP가 25인 메탄은 이산화탄소 보다 25배 높은 온난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 한국의 메탄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메탄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 톤(CO₂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합니다. 메탄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산업군은 농축수산(43.6%), 폐기물(30.8%), 에너지(22.5%) 순입니다. 국제 메탄 서약 목표 달성을 맞춰,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9.7%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COP27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 메탄 서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재약속해, 국내 메탄 다배출 기업의 감축 이행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메탄 감축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OGCI(Oil and Gas Climate Initiative)* 회원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제로(0)에 가깝게 줄이겠다고 지난 3월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에너지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4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12개 석유·가스 글로벌 회원사로 구성

[도표 3] 인위적 활동에 의한 6대 온실가스 비교

	지구온난화지수 (GWP)	대기 중 체류 기간 (년)	전체 온실가스 중 대기 배출 비율
이산화탄소(CO ₂)	1	100~300	76%
메탄(CH ₄)	21~25	12	16%
이산화질소(N ₂ O)	298	114	6%
수소불화탄소(HFCs)	675~14,800	4.9~270	
과불화탄소(PFCs)	7,390~12,200	10,000~50,000	2%
육불화황(SF ₆)	22,800	3,200	

*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감시 용어해설집」,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국제 메탄 서약’ 서명국 150여 개로 늘어…중국은 끝내 불참 – 한국경제 (2022. 11. 18.)

3. 생물다양성 보존, ESG 경영 전략에 고려 필요 E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시 국총회(COP15)가 개최됩니다.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무엇인가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과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합니다.

*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 생물다양성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생물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활동(산업화, 도시화, 환경오염, 밀렵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는 기업의 활동, 그리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세계자연기금(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22(Living Planet Report 2022)'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018년까지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감소

[도표 7] 생물다양성의 정의



* 자료: 환경부 PwC

□ 생물다양성과 기업의 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생물다양성은 기업 활동과 쌍방향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활동(원자재 조달, 토지와 에너지 사용, 유통 및 투자 등)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생물 자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장 설립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화장품, 식음료 산업군에서는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산물이나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기업과 생물 다양성 플랫폼; 환경부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18. 8. 24

[도표 8] 생물다양성 및 기업의 활동 간의 관계



□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기준이 있나요?

지난해 6월, 생물 다양성 손실이 곧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국제사회는 주요 국제 기구*가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금융기관, 주요 정부(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기관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테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고, 내년 9월에 보고 프레임워크를 발표 후 ISSB가 추진 중인 통합 ESG 공시안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 유엔개발계획(UNDP)·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세계자연기금(WWF) 등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12월 캐나다서 COP15 개최…생물다양성의 '파리협정' 나올까](#) - 뉴스트리 (2022. 11. 1.)
-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7일 개막, 공시 의무화 가능성에 국내 기업도 촉각](#) - 비즈니스 포스트 (2022. 12. 4.)

4. 정부, 예방 강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S

정부는 2026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어드, 1만 명 당 비율)로 감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 임금근로자 수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계산식은 (사망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10,000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0.43‰)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고자,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왔지만 산재 사고 사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사망사고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도표 9]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및 선진국 비교 현황 (단위: 명, ‰)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 로드맵은 어떤 내용이며,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023년부터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하여 평가가 미흡한 기업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구형·양형 판결 시 노력 사항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안전 등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 정책브리핑 (2022. 11. 30.)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 고용노동부 (2022. 11. 30.)

5. 미국 상장사 이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ESG G

최근 PwC US가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는 ESG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사안별, 기업 규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 PwC US는 매년 S&P 500 기업 이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주요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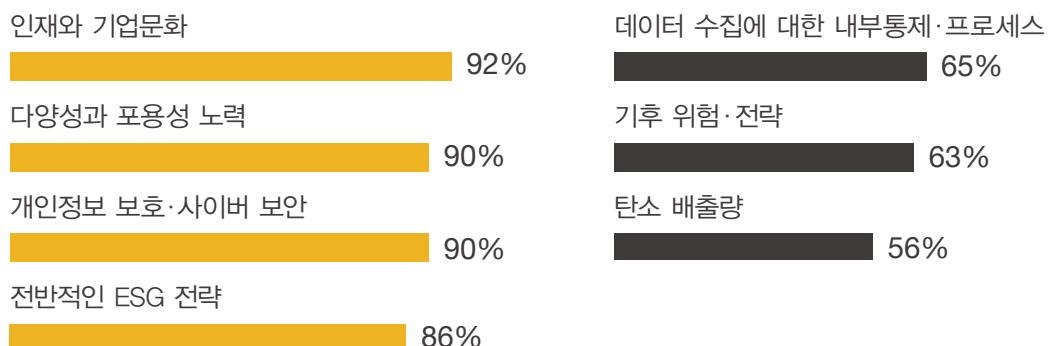
▣ 환경 관련 이사회 전문성 제고 필요

과반의 이사회가 ESG를 정기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인재와 기업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이사는 90%를 상회한 반면, 탄소 배출량, 기후 위험과 기업의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이사는 각각 56%, 63%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표 4]

■ 이사들은 ESG에 대해 확신하지만 기후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사회가 다음 영역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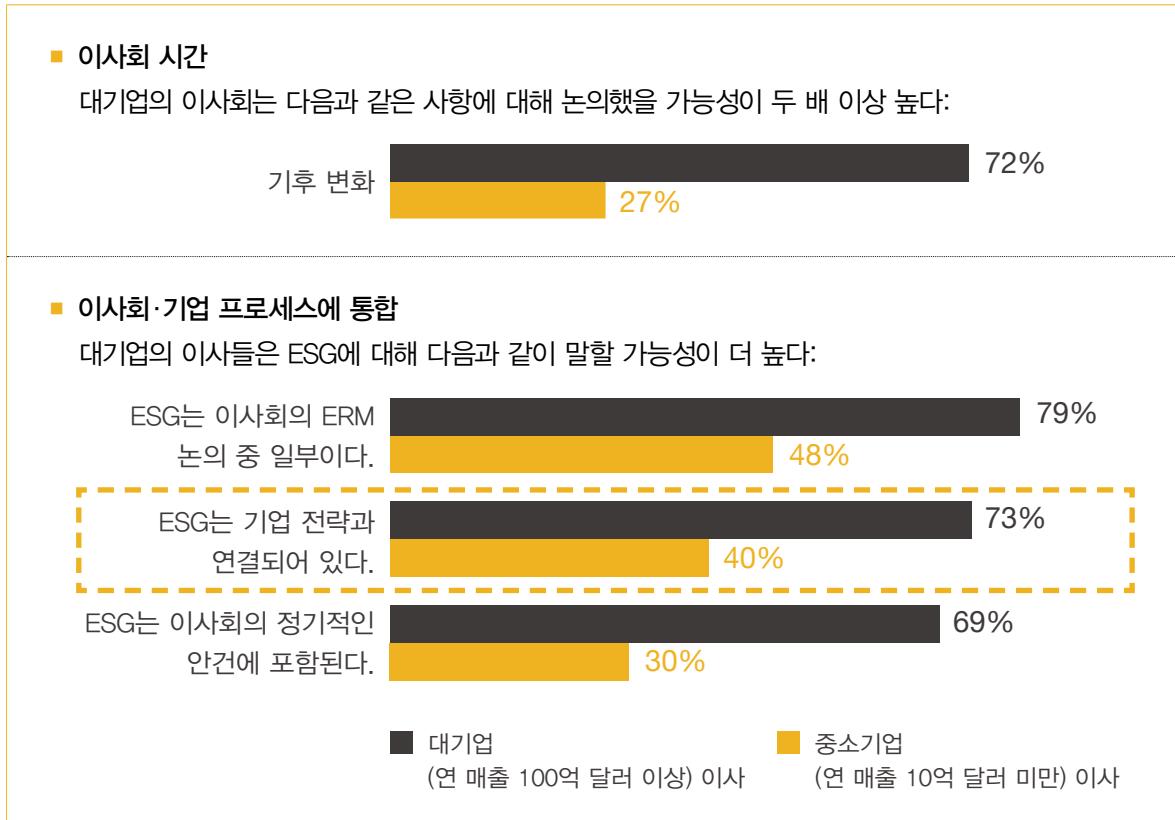


* 자료: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기업(대기업)의 경우 ESG 이슈가 기업 전략과 연계된다고 답한 이사 비율이 73%에 달했지만,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중소기업)의 경우 4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한 비율도 대기업 72%, 중소기업 2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ESG 영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감독 역할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표 5]



* 자료: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관련 원문 보러가기 (Click)

- 「거버넌스 포커스 Vol.1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6.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최종 채택 E S G

유럽연합(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11월 28일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 CSRD란 무엇인가요?

EU의 CSRD는 기존의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대체하는 보고 지침입니다. NFRD에서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계속되자,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CSRD가 최종 적용되면 NFRD 의무 공시 기업보다 4배 많은 약 5만 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CSRD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정보는 독립적인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지침에 적용 받는 기업의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EU 역내 상장사와 3개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비상장 대기업에게 CSRD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 EU 기업도 1억 5천만 유로의 연매출을 EU 역내에서 창출하고, EU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또는 Branch를 보유한 경우 CSRD를 적용 받게 됩니다.

[도표 6] CSRD 적용 범위

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EU 역내 상장 기업EU 역내 비상장 대기업(아래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ul style="list-style-type: none">총자산 규모 2천만 유로 이상연간 총매출 4천만 유로 이상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
비 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EU 역내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EU 내 최소 하나의 자회사(상장 또는 비상장 대기업) 또는 Branch(연 매출 4천만 유로 이상)가 있는 기업

* 자료: European Council,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CSRD 이행을 위한 공시 기준이 있나요?

지난 11월 16일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CSRD 지침에 따라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더불어, 3대 공시 기준 제정 기관 중 하나인 IBB 또한 EU의 공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 즉, 각 공시 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CSRD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NFRD에 따라 공시하는 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2025년부터 공시해야 하며, 그 외 대기업은 2026년부터 공시해야 합니다. 기준에 부합되는 비 EU 기업은 2029년부터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국내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CSRD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CSRD가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에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미리 대비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European Council (2022. 11. 28.)

7. (번외) ESG Newsflash – COP27 Takeaways 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지 30년째 되는 올해, 제27차 당사국 총회(COP27)이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COP26에서는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그야말로 경제 환경의 대전환을 맞이하였던 반면, 이번 COP27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새로운 과제들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COP26 합의 결과에 따라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달라졌듯이, 그간의 목표들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COP27 이후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27의 중요한 성과 및 주요 내용

COP27 최종 합의문과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들 중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샤름 엘 세이크 이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채택

‘협상 및 계획에서 실제 이행’이라는 비전으로 가지고 시작한 이번 COP27에서는 주요 쟁점 의제(손실과 피해, 지구 온도 상승 허용치 등)와 관련 당사국 간 의견 차이로 당초 계획되었던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긴 11월 20일에 최종 합의문인 ‘샤름 엘 세이크 이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였습니다.

•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하는 파리협정 유지

국가별로 기준 협의된 지구 온도 상승 허용치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으나,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준인 1.5도 제한 유지

•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유지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 제안이 있었으나, 당사국 합의 도출에 실패, COP26 기후 협정에 명시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유지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최종 합의

–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목적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조성 문제를 당사국 총회 역사상 최초 공식 의제로 채택 및 합의함. 기금 조성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선진국의 자발성이 기초로 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의 부재가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해당 의제는 COP28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의 정의를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기준으로 하여 한국, 중국 등은 피해 기금 이행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경제 규모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감안할 시, 한국의 책임론 또한 언급될 가능성 있음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 지침의 일부 채택
 - 지난 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됨^(*)1)
 - 'COP27에서는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일부 기술 지침(제6.2조, 제6.4조)이 채택되었고,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을 위해 국가 초기 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사후 기술 전문가 검토 지침 등을 확정하고, 청정개발체제^(*)2)(제6.4조)의 사업 기간 한정, 감축실적(CER)^(*)3) 사용 서면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및 지침은 COP28에서 논의 예정

(*)1) 총 감축 목표(2억 9,100만 톤)의 12%(3,150만 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로 했던 한국의 NDC 달성을 방안으로 인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조항인 제6조의 세부 이행 규칙은 중요했던 사안

(*)2)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3)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시킨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

② 미국, 개발도상국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활용 제안

- 미국, 존 케리 기후 특사는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아닌, 탄소배출권 활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안

* 탄소배출권 활용: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등이 재원 등을 조성하면, 해당 재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실현에 기여한 만큼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발급

③ UN, 그린워싱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보러가기](#))

- COP26에서 UN 사무총장은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 결성을 계획.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UN고위전문가그룹(HLEG: High Level Expert Group)은 이번 COP27에서 넷 제로 달성을 약속한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조사 지침을 발표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방법, 탄소배출권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10가지 권장 사항으로 구성

④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ISSB의 IFRS S2로 공시 기준 통합

- 주요한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향후 일치된 기준의 공시 데이터를 전 세계에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ISSB의 IFRS S2(기후 공시 기준서)를 통합하겠다고 발표

⑤ 국제메탄서약 가입국 증가 및 글로벌 메탄 규제 강화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영국에서 열린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103개 국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서명
- COP27에서 약 50개 국이 추가 가입하여 150여개국이 국제메탄서약에 서명하였으나, 메탄 최대 배출국 중국·인도·러시아는 미가입
- 미국 환경보호청은 메탄 누출 방지 및 감축 위한 규칙 발표하였으며, 캐나다와 나이지리아 또한 메탄 배출 관련 엄격한 법률 발표

⑥ 일부 국가 COP26 대비 온실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발표(EU, 호주, 터르키예 등)

- COP26에서 각 국가들은 2030 목표를 재검토하고, 2022년 말까지 목표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개 국 제출
- NDC 목표 상향 조정 국가 현황: EU(55% → 57%), 호주(35% → 43%), 멕시코(30% → 35%), 터르키예 (21% → 41%), 인도네시아(29% → 31.89%) 등
- COP27 계기 첫 NDC 제출 국가: 바하마, 베트남, 안도라, 동티모르

GAAP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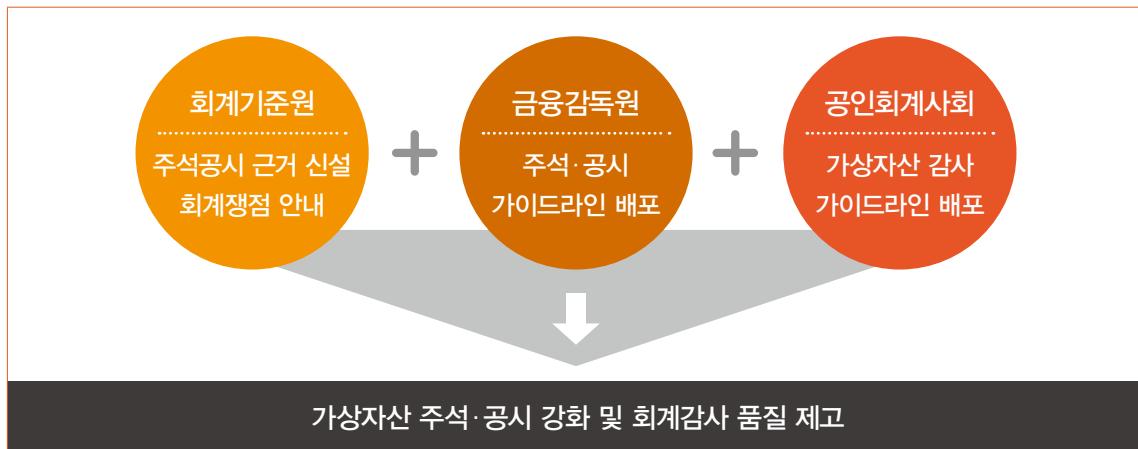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새로운 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
 -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
- *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 간담회 논의 결과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돋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 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



- (정보이용자 측면)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 (의무화)
 -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 신설 회계기준원
 - 기업이 충실히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금융감독원
- (회계처리 측면)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 회계기준원
 -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고려
- (회계감사 측면)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공인회계사회
 - *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제성, 발생 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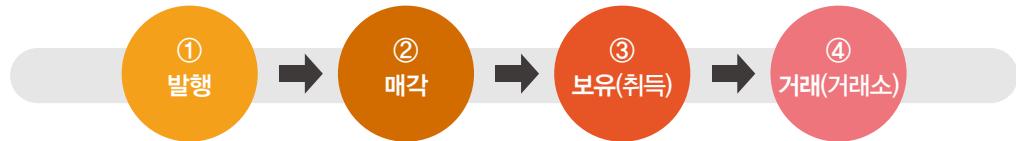
3. 향후 일정

-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금감원·기준원·한공회 – 2022년 12월 28일) 등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
 -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
 -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참고 1 -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및 회계 이슈

- 가상자산은 크게 ① 개발·발행(발행사), ② 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③ 취득(보유자), ④ 시장거래(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 발생



- 가상자산 거래별 핵심 판단사항 및 회계이슈 (요약)

단계	핵심 판단사항	국내 현황	제기되는 회계이슈
발행	개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으로 인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	통상의 무형자산과 다르므로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 (▶ 기준서 제·개정 필요)
매각	매각대금의 수익인식을 위한 계약상 수행 의무* 완료 여부 * 수행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매각 계약상 의무 vs 백서상 의무) 여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 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이연 다만, 발행사의 수행의무의 범위, 이행 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가상자산의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폼의 안정화 및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백서 등의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 다만, 수행의무 범위 등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행사가 직접 주석 공시로 제공할 필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보유(취득)	재고자산(영업목적) 또는 무형자산 분류의 적정성 여부	증가 목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취득 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상승은 불인정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은 공정가치 평가로 가치 상승 재무제표 반영 필요 (▶ 기준서 제·개정 필요) 보유 가상자산 현황(보유 목적, 규모 등)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거래(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 * 가상자산 암호를 거래소가 보유하고, 해킹 등의 발생 시 거래소 책임 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식 필요 주장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인식 ※ IFRS는 자산의 통제권을 기준으로 자산 인식 여부 결정 아울러, 위탁된 가상자산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 위험과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 제기 ※ 일본(2018년 3월)과 미국(2022년 3월)은 거래소 자산과 부채로 인식 위탁자산의 주석 정보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고 강화할 필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참고 2 –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이슈

● 별도의 주석·공시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큼
- 또한, 주석·공시 기피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석공시 의무화^{*}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기준서에 주석·공시 근거를 신설할 필요
 - * 기준서상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공시만 가능

● 개발 및 발행(매각) 관련

- 플랫폼 구축 등 발행사의 의무 범위와 이행 정도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나 수익 인식 등에 영향을 미쳐 관련 정보제공이 중요
 - … 매각한 경우 매각 대가, 수익인식 여부 등의 정보도 제공
- 개발사 보유 가상자산은 총 발행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수량(변화), 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

● 보유

- 투자자 등의 경우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목적 및 경로, 금액 규모, 시장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가상자산 사업자

-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해킹 등 발생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
 - … 위탁 가상자산의 금액, 수량 정보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등을 공시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2023 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배경

-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주기적지정 등 본통지가 실시(2022년 11월 11일)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1) 및 선임절차^(*2)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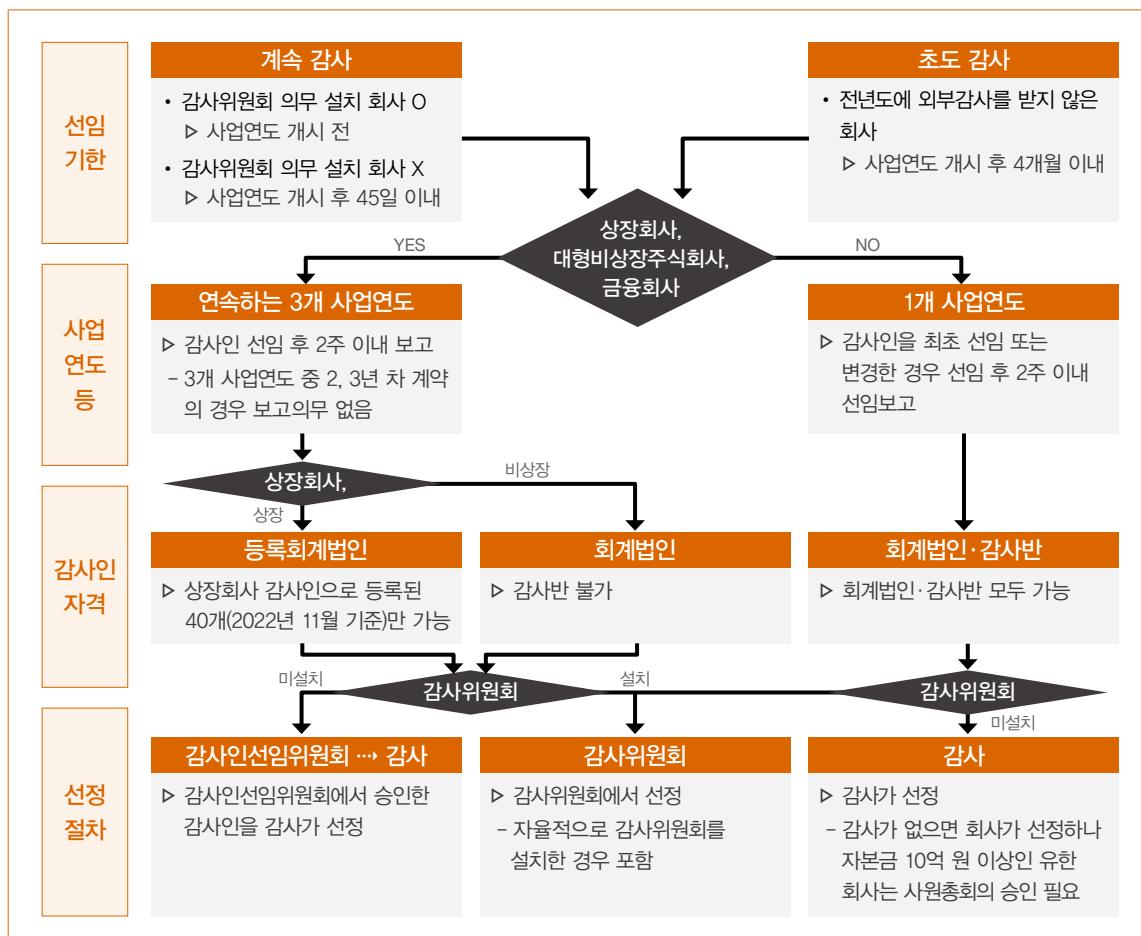
(*1)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023년 1월 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 2023년 2월 14일까지

(*2)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 신 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2019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193개 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 만료로 인한 2023년 자유선임계약 체결 필요

[도표]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 자료: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2.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

-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험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하여 회사에 제시
- 감사 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업무 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

감사계약 체결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 ❶ A 회계법인은 B 회사의 보험계약 기준서(IFRS 17, 20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재무정보 체계의 구축)을 수행(2018년 1월~2022년 11월)하고 B 회사와 IFRS 17 적용 첫해(2023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험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 ❷ C 회계법인은 D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2021년 4월~2022년 10월)하고 D 회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해(2023년)*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험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 회사의 IFRS 17 적용 재무제표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정감사는 2023년 이전에는 없었음

(2) 회사가 유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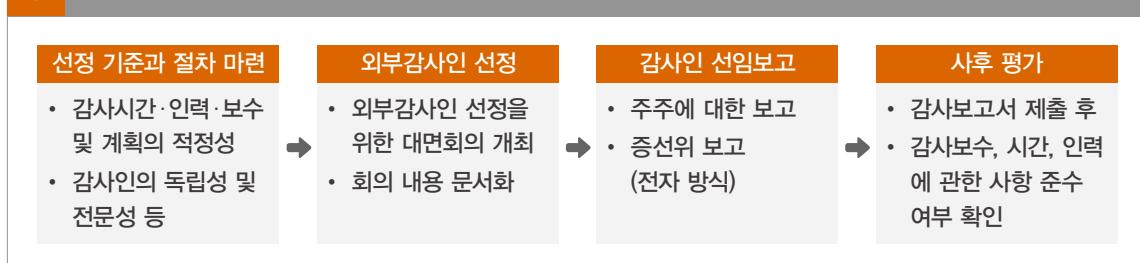
-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 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문서화 필요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 필요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E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 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 회계법인)을 선임



참고.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외감법§10 등)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
-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

GAAS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2년 12월 5일) 통과

1. 개요

- 정무위원회는 12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규모(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 개정안 주요 개요

- (현행) 개정 전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받아야 함
- (개정)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다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동일하게 받아야 함
- (기대 효과)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 비용 절감이 예상됨

3.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임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공시서식 상세화)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 … 외감 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 변경 예고(금년 중)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2022. 12.)

최신 세무뉴스

국세청, 상호합의체결 현황 발표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430건을 해결하였다고 11월 20일 발표함.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총 190건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37개월임.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또한 국세청은 조세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2022년 10월 동안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처리실적은 240건으로, 연 평균 처리실적은 49.7건임.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1월 23일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번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 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②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 제공한 탈세혐의자; ③ COVID-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례들이라고 밝힘

정부,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함.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임. 정부는 주택 보유세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함

신규 발효 협정: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12월 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힘.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COVID-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 접근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또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 선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음

* 관세철폐율(%): (품목수 기준) 한국 95.2, 이스라엘 95.1, (수입액 기준) 한국 99.9, 이스라엘 100

최신 세무예규판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조특령 §2 ②)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기령 §3 ① 2호·별표 1·별표 2, 이하 '중기령')의 개정이라는 기업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조특령 §2 ⑤)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중기령 개정 전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이 중기령이 개정된 2015사업연도에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과 개정 전의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중기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기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서면-2020-법인-5279, 2021. 2.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개정 전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은 중기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2022중6459, 2022. 11. 2.)

즉,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 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기령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면서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령 개정이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없었다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유예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결정으로 이해됨

따라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개정된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 12. 9.)

적격 간주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사후관리 사유 위배 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한법('지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법법 §44 ②) 또는 적격 간주 합병(법법 §44 ③)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을 2024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 이하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특법 §57의 2 ① 및 지특령 §28의 2 ①). 한편, 법인세법은 적격합병 또는 적격 간주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중단하되, 적격 간주 합병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위배하더라도 과세특례 중단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법 §44의 3 ①, ③)

참고로, 적격 간주 합병이란 적격합병 요건(법법 §44 ②)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완전자법인 간 합병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 간 합병을 말함 (법법 §44 ③)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중단 대상이 아닌 적격 간주 합병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합병법인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한 경우 지특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중단되지 않는 적격 간주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이는 지특법에서 법인세법과 달리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합병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특법상 추징사유도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전체가 아닌 같은 항 각 호의 사후관리 사유만을 인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됨 (법제처22-0398, 2022. 11. 9.)

따라서, 적격 간주 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를 위배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의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특법상으로는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 3. 23., 조심2017지0241, 2017. 5. 17.)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K-SOX 동향

금융감독원 「2022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7일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2년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설명과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③ 질의회신 사례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와 ④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 중 ① 2022년 개정된 기준서 및 ③ 질의회신 사례는 회사의 회계정책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와 연관되어 활용 가능하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관련 동향 파악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업무자료 ▶ 회계 ▶ 자료실 ▶ [교육·참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발표

2022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아래 기재한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①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 ②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 ③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된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회계법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1월 18일 미국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8일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재무보고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PwC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종속기업이 위치한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해외 현지법인들이 지난 궁금증과 애로사항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 세미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은 한국의 재무보고 환경 변화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의 과정에서 경영관리 영역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2023년 이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과 그룹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결산에 대비한 재무보고내부통제(K-SOX) 준비 및 유의사항

어느덧 2022년이 며칠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결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하에서는 연차결산과 관련된 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앞으로의 기간동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결산에 대한 점검을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분	항목	고려 사항
통제의 운영	제·개정 회계기준 적용 및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기에 신규로 적용되는 제·개정 회계기준 및 차기에 적용될 예정인 회계기준 영향분석
	변화관리 및 미비점 시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변화관리: 중간평가 이후 조직,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변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미비점 시정 조치: 전기에 발견된 미비점이 개선되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와 당기에 신규로 발견된 미비점의 시정 조치 계획과 이행 경과, 그리고, 해당 미비점이 개선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설계 및 운영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평가
	비경상거래의 파악 및 회계처리 검토	<p>*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3</p> <p>특히,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기술 일반통제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세스에 내재된 자동통제, 수동통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며, 기존 통제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경상거래는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임. 따라서, 연차결산 이전에 당기에 발생한 비경상거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위험평가의 중요한 과정임비경상거래 파악을 위한 활동과 고려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의위원회 등 회사 내의 주요 위원회에 재무책임자가 배석하여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비경상거래의 유무를 파악하고 회계처리 영향을 검토- 각종 의사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경상거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 조건을 파악- 파악된 비경상거래의 인식, 측정, 공시 측면에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

구분	항목	고려 사항
	기증 파악된 이슈에 대한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전기 및 중간기간에 발견된 주요 수정 사항의 발생 원인과 시정 여부에 대한 점검 외부감사인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경영진 의사결정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문서화. 특히 주요 회계추정치 산정 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가정과 최근 수립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가정과의 일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결산준비 및 이슈점검	불확실한 경제 상황 하의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계추정치 등과 관련된 결산 항목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인상: 자산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 시 고려 사항에 포함 공급망 위협: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감소, 유형자산 및 영업권 손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위험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비용 증가,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재고자산 회전율 및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등 시장 변동성: 금융자산 손상, 유동성, 차입약정 위반, 경영진의 중요한 가정의 변경 경기침체: 기업의 미래 운영 및 현금흐름, 자산 손상, 채무 불이행,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 회계추정치: 향후 사업 계획 및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주요 가정 및 데이터에 영향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Director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ESG

권 미업, Partner
+82 2 709 7938
miyop.kwon@pwc.com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조 영 현, Director
+82 2 3781 9238
young-hyun.jo@pwc.com

K-SOX

정 구 진, Partner
+82 2 3781 9757
goojin.jeong@pwc.com

▶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ekly Industry Issues
2022년 12월 2주 (통신·미디어, IT)



삼일회계법인의
'사회봉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컬처스튜디오 삼일
Pop-up : Ready for Connection

www.samil.com

S/N: 2212A-NL-012

© 202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